

[별표 11]

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81조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1호	자격취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2호	
가.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		자격정지 1년
나.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		자격정지 6월
3.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	법 제57조제1항 제3호	자격취소
4.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4호	
가.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때		자격정지 3월
나.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		자격정지 2월
5.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5호	자격취소
6.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	법 제57조제1항 제6호	자격취소
7.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7호	자격취소
8.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8호	자격취소
9.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9호	자격정지 1년
10.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	법 제57조제1항 제10호	자격정지 1년